

## 통보

다음 고지는 10.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

<p>1. <b>통보국가:</b> <u>체코</u> 해당할 경우,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3.2 및 7.2):</p>
<p>2. <b>담당기관(Agency responsible):</b> 원자력안전국 Senovážné náměstí 9 110 00 Prague 1 전화: +420 221 624 746 이메일: <a href="mailto:pravni.oddeleni@sujb.gov.cz">pravni.oddeleni@sujb.gov.cz</a></p>
<p>3. 조항 2.9.2 [X], 2.10.1 [ ], 5.6.2 [ ], 5.7.1 [ ], 3.2 [ ], 7.2 [ ], 기타에 근거해 통보:</p>
<p>4. 해당제품(HS 또는 국정세율 품목. 해당할 경우,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이온화 방사선원(방사성 핵종원 포함) 및 이온화 방사선원을 사용하는 작업장 장비. 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이온화 방사선원. ICS: 원자력 에너지 공학(ICS code(s): 27.120), ICS: 27.120.99 기타 표준</p>
<p>5. 제목(페이지수, 언어, 열람 방법): 방사선 방호 및 방사성 핵종원 보안에 관한 시행령 No 422/2016을 개정하는 시행령 초안(163페이지, 영어), (156페이지, 체코어) 통보 문서 열람 링크 및/또는 요청 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a hre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CZE/25_07385_00_e.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CZE/25_07385_00_e.pdf</a> <a hre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CZE/25_07385_00_x.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CZE/25_07385_00_x.pdf</a> <a href="https://technical-regulation-information-system.ec.europa.eu/en/notification/27328">https://technical-regulation-information-system.ec.europa.eu/en/notification/27328</a> <a href="https://technical-regulation-information-system.ec.europa.eu/cs/notification/27328">https://technical-regulation-information-system.ec.europa.eu/cs/notification/27328</a></p>
<p>6. 내용: 이 시행령 초안은 방사선 방호 및 방사성 핵종원 보안 분야의 법률 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특히 개정안 No 83/2025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주로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확하게 이행되지 않은 법률 조항을 반영하거나, 원자력법 개정안에 새롭게 개정된 법률 조항 반영</li><li>- 방사선 작업자에 대한 유도한계치 산출 조정</li><li>- 이온화 방사선원의 분류에 대한 개별 조정</li><li>- 수락 시험, 장기 안정성 시험 및 운전 안정성 시험에 대한 규정 조정</li><li>- 허가자와 등록자의 이온화 방사선원 기록관리 규칙에 대한 개별 조정</li><li>- 법정 인가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이 지속적인 감독을 수행해야 하는 작업장의 수를 과도하게 규정한 부분</li><li>- 통제 및 모니터링 구역의 출입 인원 변경</li></ul>

- 허가된 활동을 위한 방사선 방호 프로그램과 기타 문서, 그리고 등록된 활동을 위한 문서의 개별 조정
- 등록자의 방사선 방호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의 직무 내용 변경
- 방사선 작업자 및 작업장 주변 환경에 대한 개인 모니터링 규정 변경
- 의료용 노출에 사용되는 이온화 방사선원 및 의료 조사용 이온화 방사선원을 갖춘 작업장에 대한 요건 규정
- 방사성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신청서 제출 시 원자력안전국에 대한 통보의 새로운 규정
- 방사선 사고 규제 세부사항에 대한 새로운 규정
- 자연 이온화 방사선과 기존 노출 상황에서 특정 규칙의 명확화
- 방사선 사고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보호되지 않은 식품의 소비 및 유통 규제 및 방사선 사고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위치한 제품의 유통과 마케팅에 대한 규제
- 방사성 핵종원 보안 문화 분야의 세부 사항 도입
- 부속서 개정 – 특히 체적 활동도 변환용 변환계수 조정, 방사선 사고, 문서 또는 등록 양식 내용 변경 등

**7. 적용할 경우,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 원자력법 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법을 시행하는 법령의 개정 적합성과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시행령 No 422/2016 개정의 주요 목적은 원자력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방사선 방호 분야에서는 주로 방사선 방호를 보장하는 절차에 대한 소규모(그러나 다수의) 개정으로 구성된다. 이는 이온화 방사선원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산업 활동, 의료용(치료 및 진단) 또는 광물 채굴과 관련하여 이온화 방사선원을 사용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 시행령 초안은 원자력안전국이 모니터링 활동 과정에서 해당 시행령을 적용함으로써 얻은 경험, 국제 전문가 미션(IPPAS 분야 IAEA 미션-2021 또는 IRRS-2023 보안)을 통해 얻은 경험, 그리고 방사선 방호 및 방사성 핵종원 보안 분야의 의무 대상자와 이 시스템에 관여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제안을 종합하여 작성되었다.

현행 시행령 No 422/2016은 유럽원자력공동체 법령 요건을 체코 법에 반영하고 있다. 즉, 이온화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 안전 표준을 규정하고, 지침 89/618/Euratom, 90/641/Euratom, 96/29/Euratom, 97/43/Euratom, 2003/122/Euratom(이하 '지침 2013/59/Euratom')과 식수용으로 사용되는 물 속 방사성 물질로부터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 2013년 10월 22일자 위원회 지침 2013/51/Euratom(이하 '지침 2013/51/Euratom')을 포함한다. 인체 건강 및 안전 보호

#### 8. 관련 문서:

기본 법률 - 법령 No. 263/2016, 시행령 No. 422/2016

#### 9. 채택 예정일: 2026-02-01

시행 예정일: 2026-02-01

#### 10. 의견 제출:

의견 마감일: 2026-01-03

[ ] 통보일로부터 60일

통보 관련 의견 처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체코 표준·측량·시험청

WTO/TBT 질의처

Biskupský dvůr 1148/5

110 00 Prague 1 - Czech Republic

전화: +420 221 802 194

이메일: [wto.tbt@unmz.gov.cz](mailto:wto.tbt@unmz.gov.cz)

<https://unmz.gov.cz/en/international-relations-2/wto-tbt/information-centre-wto-tbt/>